

「세계 각 국의 목재포장재 규제현황과 전망」



국립식물검역소 방제과
식물검역사무관 허승무

1. 목재포장재에 대한 국제적 검역 실시 배경

- 화물의 수송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통상적으로 식물검역 대상은 아니지만 목재를 가공하거나 소독처리를 하지 않은 생목재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래병해충이 부착되어 함께 유입될 가능성이 많은 품목이며 이 때문에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검역 선진국가에서는 일찍부터 목재포장재를 식물검역 대상으로 지정하여, 자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사용된 모든 목재포장재에 대해서는 MB훈증 등의 소독처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 또한 EU,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도 목재포장재를 통해서 소나무재선충이나 유리알락하늘소와 같은 중요한 병해충이 유입되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해당 병해충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산 목재포장재에 대해 검역조치를 요구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 목재포장재에 대한 외국의 검역기준

수출화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한 목재포장재(예 : 파렛트, 나무상자, 반침목, 충진재 등)에 대하여 식물검역상의 이유로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의 구체적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 (2002년 2월 20일 선적분부터 적용)

- 침엽수로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목재 중심부 온도 56°C 이상으로 30분이상 열처리되었다는 증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상기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도착지에서 검역처리되거나 반송 또는 폐기.
- 침엽수로 제작된 목재포장재가 아닐 경우는 수출자가 침엽수가 아니라는 서류(사유서)를 첨부토록 조치

□ 핀란드

- 소나무류로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다음의 요건중 1가지를 증명하는 국립식물검역소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검사결과 수피가 없어야 하며, 수분함량이 20% 미만, 3mm 이상의 벌레구멍이 없을 것.
 - 열처리(목재중심온도 56°C에서 30분간)
 - Kiln-drying 처리되고 수분함량이 20% 이하
 - 훈증(MB 등) 처리내역
- 상기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는 폐기 또는 반송조치.

□ 러시아

- 침엽수 및 낙엽수로 제작된 목재포장재의 경우 국립식물검역소에서 발행한 식물검역합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상기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 검역대상병해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사 및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검역대상병해충이 발견되면 화주의 부담으로 MB훈증(또는 고열건조처리)처리 또는 도착항에서 러시아 내로의 반입금지됩니다

□ 호주, 뉴질랜드

- 수피가 부착되었을 경우 폐기 또는 반송
- 선적전이나 도착지에서 소독처리 되어야 합니다.
 - 소독방법 : MB, SO₂F₂, 열처리, Ethylene oxide, r선 처리 등
 - 단만 선적전 소독처리한 경우에는 적재하기 21일전에 소독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통관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EU

- 침엽수로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수피 및 3mm이상의 벌레구멍이 없어야 하며 제조당시 수분 함량이 20%이하이어야 합니다.
- 상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는 폐기 또는 반송조치

□ 브라질

- 목재포장재는 선적전 15일 이내에 MB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상기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는 화주부담으로 훈증소독실시

□ 칠 레

-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목재포장재는 수피, 해충이 가해한 흔적이 없어야 하며 상기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는 검역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3. 목재포장재의 검역에 관한 통일된 국제기준 제정

- 목재포장재를 통한 병해충 유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가별로 검역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간 무역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목재포장재를 식물검역 차원에서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지침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FAO 산하의 식물검역관련 국제기구인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사무국에서는 2000년도부터 목재포장재의 식물검역에 대한 국제기준 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고 2002년 3월 「국제교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목재포장재의 식물검역적 규제를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4. IPPC 국제기준「국제교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 지침」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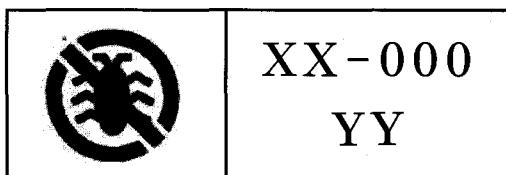
○ 규제 적용 대상

- 침엽수 목재포장재와 비-침엽수 생목재 목재포장재(침칼개 포함)
- 합판,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베니어 등의 가공품과 톱밥, 대패밥 등은 적용 제외

○ 요건

- 목재포장재는 수피가 제거된 나무로 제작되어야 함.
- 다음 중 한가지의 소독처리를 실시하고 포장재에 아래의 중명표식을 부착
 - 목재 중심부의 온도 56°C에서 30분간 열처리
 - MB 훈증

온도	약량	최소농도(g/m ³)			
		0.5hr.	2hrs.	4hrs.	16hrs.
21°C 이상	48	36	24	17	14
16°C 이상	56	42	28	20	17
11°C 이상	64	48	32	22	19



XX : ISO의 2자리 국가코드
000 : 식물검역소가 부여한 고유번호
YY : 적용된 조치에 대한 약어
(HT 또는 MB)

※ 위의 소독처리 마크는 민간기업이 상표등록하여 사용이 중지되었으며 현재 새로운 마크를 제작중임

○ 요건 불이행시의 조치

- 다음과 같은 경우 소독, 폐기(소각, 매립, 가공 등) 또는 반입금지 조치
-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표식이 없거나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었음이 발견되거나 표식은 있으나 살아있는 병해충의 증거가 발견된 경우

5. 향후 전망

○ 현재까지는 국가별로 검역요건이 상이하나 IPPC 차원의 국제기준에 따라 통일된 규제조치 적용이 장려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캐나다, 대만 등은 현재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입규정을 재검토하여 IPPC 국제기준과 조화시키기 위하여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우리나라의 규제 방향

○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목재포장재에 대한 규제조치 방향을 검토하면서 FAO / IPPC(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제정한 「국제교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 지침」에 따라 모든 수입화물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승인된 소독처리후 처리내용을 목재포장재에 표지도록 관련식물검역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며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소나무재선충이 분포하는 국가에 대한 수입금지식물 사용여부 및 승인된 소독처리 유무를 확인하여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조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7. 소독처리된 수출용 목재포장재 위생증명서 발급 요령(개정)

가. 수출식물 검사신청서 접수

검사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해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업체(열처리 업체 또는 방제업체)가 발행한 소독작업 결과서(열처리 또는 훈증)를 첨부도록 한다.

나. 검사신청서 검토 및 증명서 발급

1) 소독작업결과서의 품목 및 수량이 수출식물검사신청 내용과 동일할 경우

식물방역관은 수출식물검사신청서의 품목과 수량이 소독작업결과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작업결과서의 소독처리 상황을 검토하여 규정된 처리가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2) 소독작업결과서의 품목 및 수량이 수출식물검사신청서와 다를 경우

① 품목이 다른 경우(원자재를 열처리하여 포장재를 제작한 경우)

식물방역관은 신청인(수출자)으로부터 검사 신청한 품목이 모두 소독처리된 것으로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자재 소요량 확인서 등)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수량이 다른 경우(분할하여 수출하는 경우)

소독처리한 목재포장재를 분할하여 수출검사 신청할 경우 식물방역관은 위생증명서 발

급 전에 소독작업결과서의 위생증명서 발급상황을 확인하고 신청한 검사 수량 이상의 재고량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다. 기타사항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출용 목재포장재 열처리 규정”, “수출입식물소독처리규정”, “수출식물 검사실시 요령” 등 식물검역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